

< 서면답변서 >

- 임성균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 제2호 2000. 11. 27)

<질 의>

- 안양석산의 조경수중 소나무를 암반지역에 식재하면 고사되는 확률이 높다고 하시면서 하자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안양석산의 조경공사는 '96. 4. 1 착공하여 '99. 5. 24 완료되었습니다. 비탈면은 코팅망, 녹생토, 코아넷트 등을 설치하였으며 소단부에는 양질토로 복토하여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교목 7,558주를 식재하였고 이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나무는 6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 조경복구공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석산개발은 '99. 6. 30 완료되었으며 이후 '99. 10. 8 행정재산 용도폐지후 '99. 12. 30 자치행정국으로 공유재산 인계하였습니다.
- 조경수 식재에 대한 하자조치에 있어서는 '99. 10. 14 하자검사결과 소나무 8주를 포함하여 284주의 교목이 고사되어 일괄 하자보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하자검사 등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0. 6. 3 회계과에서 실시한 하자검사 조치내역을 확인한 바 교목류 85주를 하자보수 하였으며 소나무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 의>

- 건설도시위원회 현장방문시 건의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비고
○ 미보상필지가 13필지인데 미보상사유 및 보상가가 감정가의 1/10밖에 안되는데 그 사유 및 대책 ○ 공사시행중에 '98년도와 같은 수해 발생시 대책은 ○ 동절기 공사대책 ○ 하천내 교량이 좁거나 낮은 지역은 확장 및 승상등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요망 ○ 흙관에 부착되는 자동문비는 집중호우시 수해피해가 가중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잘 검토하여야 하며 관광지 구간내 호안시공은 환경친화적인 대책이 있는지 ○ 공사시행으로 발생하는 폐천부지에 대한 처리대책 ○ 자재납품과 관련 품질시험결과 부적합 여부 ○ 관광지내 하천이 급하게 변하는 구간을 석축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는데 옹벽으로 변경시공할 계획은 없는지 ○ 호안시공중 동망태, 석축, 자연석호안 시공구간은 어느 곳에 적용하는지와 배수공 및 교량공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시공하기 바람.	○ 지장물 및 토지보상 완료 ○ 2000년에는 홍수피해가 없었으며 2000. 12. 29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 ○ 동절기 이전에 구조물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000. 12월중 공사준공 예정임. ○ 교량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기 설치 완료하였음 ○ 관광지내 호안공사는 환경친화적 공법인 자연석 호안공사를 시공완료하였음 ○ 폐천부지는 발생하지 않음 ○ 품질시험결과 부적합은 없음 ○ 수리영향검토를 통하여 설계된 사항으로 호안을 변경하지는 않았음 ○ 돌망태는 하폭이 넓고 유속이 빠른 곳에 석축은 하폭이 좁고 유속이 적은곳, 자연석은 환경친화적인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교량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완료하였음	

□ 장안교 가설공사 현장(2000. 4. 20)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비 고
○ 경운기 및 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으로 인한 차량사고가 없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람 ○ 부설공사가 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사관계 공무원 등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공표석에 담당공무원 등 공사관계자들의 이름을 남기도록 하기 바람 ○ 남양호 자재야적장을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교량상부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연결부분 철근에 녹이 슬어 있으니 콘크리트 타설시 녹을 제거하기 바람	○ 자동차 전용도로(경운기, 트랙터) 경계에 도로표지병 설치로 운전자들의 주의 운전 유도 ○ 장안대교 교명주 설명판에 공사관계자 명단 기재 ○ 관련기관인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였으나 불가 통보 ○ 콘크리트 타설시 녹제거후에 Con`c 타설완료	

○ 장영남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 제2호 2000. 11. 27)

<질 의>

- 문산지구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리모형 시험을 하지 않고 수해복구사업비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하천수리모형 시행대상은 특별한 법령과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대규모 종합개발사업(한강종합개발, 굴포천정비)과 하천내 수리적 수치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에 수리모형시험을 하고 있으나
- 하천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수리모형시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부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계획선에 의거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중앙에서 시행하는 하천수해복구 및 개수사업에 대한 수리모형 시험 시행여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관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수리모형시험을 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덧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차승남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 제2호 2000. 11. 27)

<질 의>

- 합리적인 설계변경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설계변경 발생 주요요인
 - 주민욕구 증가(민원사항), 설계당시와 시공여건 변동 및 수년에 걸친 장기계속공사시 물가변동사항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 기타 설계시 지역여건의 불충분한 조사 등으로 설계변경 요인 발생
- 설계변경의 합리적인 대안
 - 장기계속공사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
 - 설계당시 충분한 지역여건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 설계용역에서부터 착수, 중간, 마무리 3단계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자가 참석하는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공사착공전 감리업무를 우선 착수하여 설계내역 전반에 걸친 검토 등을 통하여 물량누락, 설계착오 등 부실설계요인을 사전 검토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최소화

○ 설계부적정에 따른 벌점 부여 실적

사업명	대상업체	부실내용	벌점	비고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주)금호엔지니어링 오동권	강교 보강철근 구조검 토 부적정	3	'97. 1. 18
장안교 가설공사	(주)건화엔지니어링 황광웅	수량산출 및 설계도서 작성 소홀	2	'97. 6. 11
공무원수련원 조성공사	진우건축사사무소 김동훈	현황측량 잘못, 수량산출 잘못 등	1	'98. 1. 9
공무원수련원 조성공사	정병창	현황측량 잘못, 수량산출 잘못 등	1	'98. 1. 9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 을 조성공사	(주)신성엔지니어링 김정길	지붕슬래브 설계하중 잘못	1	'99. 6. 10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 을 조성공사	이대구	지붕슬래브 설계하중 잘못	1	'99. 6. 10

※ 「대통령 은전조치」에 의거 '99. 12. 31일 이전의 건설업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불가

○ 문부춘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 제2호 2000. 11. 27)

<질 의>

○ 과적단속검문소에 근무하는 단속직원의 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8년 과적단속과 관련하여 단속공무원들의 부정이 사회문제화되어 우리 도의 과적단속원에 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직무유기, 금품수수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 과적단속원의 비리 의혹을 없애고 근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월 1회 단속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및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적 고정검문소를 불시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98 과적검문소 부정의혹사건 현황

1998. 11. 13 : 검문소 단속원 비리수사 착수(경기도지방경찰청)

1999. 5. 16 (1심, 수원지방법원)

- 유죄판결 : 단속원 9명(공무원 4, 공익요원 5)

- 죄명 : 직무유기, 금품수수

2000. 2. 27(2심, 서울고등법원)

- 무죄판결 : 항소 6명 전원

※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3명 항소포기

<질 의>

- 하도급시 관내업체 참여확대 대책과 낙찰정보를 관련 건설업체에 미리 제공하고 하도급 결과를 건설도시위원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 변>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는 하도급업체를 지역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 원사업자의 하도급결정은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업체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청에서는 간접이 어려운 실정이나 원사업자와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관내업체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 본부에서는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당일 적격심사대상 업체를 즉시 공개하여 관련업체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도급업체 선정결과를 건설도시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발주전 감리책임제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현행감리제도 운영실태

- 공사발주후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공사감독 권한업무 대행
- 설계도서 검토인력 부족으로 공사계약후 적용단가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도출시 계약단가 조정 불가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의무화

☐ 개선방안

- 공사발주전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업체로 하여금 설계단가, 공법 등을 검토토록 하여 공사발주 전에 수정, 발주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및 예산절감 기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 건설공사 착공 전에 감리전문회사 선정토록 규정

☐ 추진실적

- 감리업체 선정현황

2000년 발주대상	감 리 발 주	공 사 발 주	비 고
계(4건)	2건(통합감리)	1건(3건 발주중)	
송리~반송	2000. 9. 28 착수	발 주 중	
남양~팔탄	(2000. 9. 28 계약)	발 주 중	
예 계 교	2000. 9. 29 착수	발 주 중	
신월~무갑	(2000. 9. 29 계약)	발주(2000. 6)	

- 사전검토로 예산절감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당초공사비	감리검토공사비	증감액
계	22,747,074	21,768,900	△ 954,374
송리~반송	8,994,074	8,469,600	△ 500,674
남양~팔탄	9,090,500	8,560,800	△ 529,700
예 계 교	4,662,500	4,738,500	증 76,000

※ 신월~무갑은 감리업체 선정전에 공사발주

<질 의>

-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시공된 삼화리 지내 통로박스 규격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들께서 11. 21일 현장감사시 박스규격이 적다고 지적하셔서 다음날(11. 22일 07:00~19:00) 보행자 및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보행자는 116명이며 교통량은 2,305대였으나 협소감을 느낄 수 있는 대형차량은 13대 뿐이었습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도시계획도로의 계획 및 설계기준에는 박스 규격을 최소 차로폭 3m이상, 통과높이 4.7m이상으로 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공된 박스 폭은 4.5m이며 보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50cm, 폭 1m의 인도를 설치하고 차로폭은 3.5m로 일반차로폭 3.25m보다 넓으나 통로연장이 55m로 양측에 벽체가 있어 대형차량 운행시 협소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스이용 인근 리장 5명의 (구포 1, 2리, 삼화 1, 3, 5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각적으로 좁은 감은 있지만 실제 자동차운전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며
- 박스 연결도로는 '91년도에 국도39호선이 이설됨에 따라 현재는 비법정도로로 관리되고 있으며 중차량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 특히 매송~송산간 도로의 비봉구간은 교통체증으로 금년중 조기개통 예정에 있어 박스 확장은 재시공시 8개월이 소요되어 매송~송산간 도로개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계획 및 시공시에 적극 반영하여 여유있는 구조물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질 의>

- 남한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하천관리권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받은 후 착수불가 통보를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남한강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2000. 2.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남한강정비사업실시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하나 2000. 2. 26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서울청→경기도)후 환경부(2000. 3. 4)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요청함에 따라
-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없이 공사에 착수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허가청으로부터 공사착수 중지요구된 상태이며
-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2000. 5. 10)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서를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중 보고서가 완료되면 환경부에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 서영석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 제2호 2000. 11. 27)

<질 의>

- 우산야영장이 4년에 걸쳐 건축연면적 924평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5회에 걸쳐 시행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었고 감리자를 중간에 변경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감리자 변경 사유와 설계변경사유 및 도면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 변>

- 우산야영장 조성계획 설계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96. 9 (주)남원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하였고 전면책임감리용역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주)신성엔지니어링에서 공사착수시인 '97. 3. 6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리자(사)의 변경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공사중 현지여건 변화, 추가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거 감리자가 검토확인 후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여 설계도면 및 내역을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 변경되어 3,634백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역]

○ 1차 설계변경('98. 8. 13)

단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전석(자연석)을 현장에 유용하는 사항과 오수관 자재변경, 야영장내 하폭 협소에 따른 유수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돌붙임 공법에서 석축쌓기 공법으로 변경하여 23억 6,700만원에서 27억 5,100만원으로 3억 8,300만원 증가

○ 2차 설계변경('98. 12. 7) : ESC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사항이 발생될 때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한 후 선급금과 기성물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27억 5,100만원에서 31억 1,700만원으로 3억 6,600만원 증가

○ 3차 설계변경('99. 7. 2) : DSC

물가변동이 100분의 5이상 감액되어 31억 1,700만원에서 30억 1,300만원으로 1억 400만원 감액

○ 4차 설계변경(2000. 1. 4)

당초 야영장건립 계획시 오수를 광주군 퇴촌면 소재 광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찾집관거를 통하여 유입토록 설계하였으나 광주군의 차집관거매설 등 오·폐수 총량관리계획을 '98. 11. 5 환경부에 승인신청하였으나 퇴촌면 관음2리까지만 승인되고 우산리 일원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승인받도록 회신되어 광주군에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2006년까지 재수립토록 하였기에 부득이 자체 오수처리장설치를 반영하였고 가옥철거 폐자재 처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단지 토공물량 조정 등으로 30억 1,300만원에서 34억 9,300만원으로 4억 8,000만원 증액

○ 5차 설계변경(2000. 4. 17)

'94. 7 기본계획당시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야영시설외에 관리동 1개소, 취사 및 화장실 2개소, 대피동 2개소 등 최소한의 기본시설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주관부서인 청소년과에서 '99. 10 걸스카우트 연맹 등 청소년야영캠프 전문가의 자문결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극대화과 편의증진을 위하고 여름우기철 실내학습 공간인 다목적강당(1,311㎡) 등의 필요성과 수영장(103㎡) 매점 및 휴게소(1동),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4동) 등의 시설물 확충 계획을 수립 통보되어 이에 따른 추가시설물 반영으로 25억 1,000만원의 사업비 증가

- 김영길 위원(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 제2호 2000. 11. 27)

<질 의>

-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기준 미달을 허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남한강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승인이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후 사업승인을 하였어야 하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승인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구하여 환경부에서는 승인절차가 잘못되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사업착수가 중단된 상태이며
- 환경부에서는 남한강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홍수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 등을 보완요구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중에 있는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미달로 발생된 문제가 아님을 보고드리며 본 환경영향평가서는 금년도 11월 중 보고서가 완료되면 환경부에 재협의할 계획입니다.